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,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‘21.11.30개정, ’22.3.1시행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·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·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
(안 제13조제2항 신설)

-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

나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(해양수산부장관) 또는 조례(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)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
(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부터 제4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”으로 한다.

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 산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산정 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: 재
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
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나. 가목 이외의 공유수면: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
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 · 사용료 의 산정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 · 사용료 의 산정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 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· 사용료 산출에 대해서 는 제1항의 산정방식과 산정기 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.</u>
<u>② ~ ④</u> (생 략)	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· 사용료 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.</u>	<u>⑥ 제3항부터 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14조(공유수면 점용료 · 사용료 의 감면)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 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점용료 ·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.	제14조(공유수면 점용료 · 사용료 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4.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: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나. 가목 이외의 공유수면: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66